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9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2,11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4. 9. 25. 피고에게 180,000,000원의 차용금을 2019. 9. 24.까지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 A은 2019. 11. 18. 피고에게 220,000,000원의 차용금을 2019. 11. 18.까지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가합58667호로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의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2. 23.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상환할 총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2,400,000원, 송달료 및 인지대 1,650,000원, 대여원금 400,000,000원, 180,000,000원에 대한 91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5,385,205원, 220,000,000원에 대한 37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2,676,164원을 합산한 422,111,369원이라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12. 24. 위 422,111,369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부친인 D은 위 170,000,000원의 변제기일인 2019. 9. 25.에 피고의 배우자 E에게 전화하여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자 하니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2019. 9. 27.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차용금 미변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하거나 강제경매를 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들을 겁박한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422,111,369원 중 차용금 원금 390,000,000원(= 170,000,000원 + 22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32,111,369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피고들은 차용금이 400,000,000원이라고 하여 이를 위 422,111,369원에 포함시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입금한 차용금 원금은 39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0,000,000원(= 400,000,000원 - 390,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2) 원고가 대여금을 반환하여 피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변호사 선임료 12,4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 원고 B의 차용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5,385,205원과 원고 A의 차용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2,676,164원 및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에 관한 송달료와 인지대 합계 1,650,000원은 원고들이 2019. 9. 25. 피고에게 차용금을 은행대출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협조를 거부한 결과 발생한 비용들이므로 위 각 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422,111,369원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겁박한 사실은 없다. 원고 B이 17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180,000,000원의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별도의 소송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5460(본소), 2013가단57115(반소) 사건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0,000원 이상의 돈 중 10,000,000원을 원고 B이 원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받은 돈의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주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을 회피하고 이자 연체를 유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 B의 부동산을 헐값에 경매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9. 9. 26. D과 E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특히 D이 ‘입금 입증은 관건이다. 입금은 분명히 입금내역서로 증거가 분명한데 G의 녹음 가지고는 입금 입증이 불가할 것이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2014. 9. 25. 입금받은 돈이 170,000,000원임을 들어 차용금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E은 차용증에 기재된

18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임의의 이행이 어렵게 되어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와 함께 F조합에 가는 등 협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금의 변제는 현금이나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지급수단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위한 원고들의 대출에 피고가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였거나 그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차용금 변제를 위한 원고들의 대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고율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변제는 원고들이 변제 시기에 따른 이해를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한 바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4)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조건부 공탁을 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의 임의경매, 강제경매나 고율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법적 지식의 부족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들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대출을 받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률상 장애 사유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출을 받아 위 422,111,369원을 변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